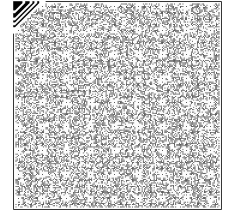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 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재안내

1. 응급의료과-518('22.1.28.)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 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재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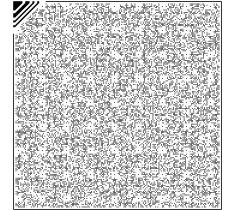
○ 대상환자 :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감염위험도가 높은 환자**

감염 위험도 “높음” 환자 분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진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제품) 양성 포함)</li> <li>·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양성</li> <li>·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li> </ul> <p>① 37.5도 이상 발열과 기침 ②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 ③ 에어로졸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p>

○ 대상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실 내·외부에 코호트 구역을 운영하는 기관

3. 해당 수가는 **2022.1.28. 진료분부터 적용(코로나19확진자는 '22.7.28.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추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하여 코호트 구역 운영 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현황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부. 끝.



##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인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울산광역시장(식약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보건의료과장), 강원도지사(공공의료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광주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대구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국립중앙의료원장

주무관 공해주 행정사무관 이지연 응급의료과장 <sup>전결 2022. 7. 28.</sup> 김은영

협조자

시행 응급의료과-3533 (2022. 7. 28.)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553 팩스번호 044-202-3930 / [khj24@korea.kr](mailto:khj24@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